

광주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54251(본소), 2019나54268(반소) 판결 [구상금
계약금반환청구의 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나54251(본소), 2019나54268(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3. 7 선고 2018가단510500(본소)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주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율

변론 종결 2019. 10. 25

판결선 고 2019. 11. 22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3. 7. 선고 2018가단510500(본소), 2018가단 516072(반소)

판결

주 문

1. 이법원에서교환적으로변경한 본소 청구에 따라,광주지방법원 2018개회10876호개인회생사건에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의 개인회생채권은 36,323,677원임을 확정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분양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대납 중도금 대출이자 및 연체료 반환 청구를 하다가 이 법원에서 개인회 생 채권조사확정 청구로 소를 교환적 으로 변경 하였다}).

반소: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65,82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반소청구취지에 따른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18행까지사이에 적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7) 한편 피고는 2018. 4. 24. 광주지방법원 2018개회10876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 12. 2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원고의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본소를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내지 8, 18내지 2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분양잔금 및 대출금 이자의 지급의무를 지체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F은행에 중도금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합계 36,323,677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하여 납부한 위 돈 36,323,677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2. 21.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원고의 채권의 내용에 관하여 원고가 이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주지방법원 2018개회10876호 개인회생사건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6,323,677원임을 확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구소인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대납 중도금 대출이자 및 연체료 반환 청구의 본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제1심 판결 중 반소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곤판사 김성준판사 박주영